

2019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

- 국제조세 분야 -



1.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
(1)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 (국조법§2조의2④⑤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원칙</p> <p>① 소득에 관한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조세조약 적용</p> <p>②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 적용</p> <p>③ 조세조약 및 국조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우회거래를 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조법 적용</p>	<p>□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</p> <p>(좌 동)</p>
<p><신 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(예 : 50%)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조세조약 및 국조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적용 ✓ (적용제외) 거래금액 또는 조세부담감소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

<개정이유> 국제적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세실효성 제고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(2) 조세조약의 해석 · 적용 원칙 신설 (국조법§3의2 신설)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원칙 신설● 조세조약 상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정의하지 않은 경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국내 세법 상 정의 또는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 해석·적용

<개정이유>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 제고

(3)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(국조법§11⑦ 신설)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□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추정과세 인정● (요건) 개별·통합기업 보고서 및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미제출● (방법)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추정

<개정이유>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및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(4)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 (국조법§12)

현행	개정안
<p>□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</p> <p>① 국제거래 자료*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</p> <p>* 국제거래명세서,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</p>	<p>□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추가 과태료 신설 및 상한 인상</p> <p>(좌 동)</p>
<p><신설></p>	<p>② 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후 과세당국의 시정요구 불응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추가 부과</p> <p>- ②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액 2억원</p>

<개정이유>

□ 정상가격 과세조정*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의 실효성 제고

*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이전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정상가격(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)을 계산하여 소득금액 재조정

●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기업에 대해 지연기간에 따라 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(5)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 (국조법§11①, 국조령§7①)

현행	개정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(소득·법인세 신고시)</p> <p>① 국제거래 명세서 - (제출대상) 국제거래 있는 모든 기업</p> <p>②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- (제출면제) (i) 또는 (ii) 충족시 (i) 전체 재화거래 50억 이하 & 전체 용역거래 10억 이하 (ii)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10억 이하 & 용역거래 2억이하</p> <p>③ 개별·통합기업 보고서 - (제출대상) 국제거래 500억초과 & 매출액 1,000억 초과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복 자료제출 정비</p> <p>개별·통합기업 보고서(③) 제출기업은 제출면제</p> <p>(좌 동)</p>

<개정이유> 국제거래 관련 유사·중복 제출 자료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(6)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 (국조법§27④삭제, 국조령§41의3신설)

현 행	개 정 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● 상호합의결과를 과세당국, 지자체장, 조세심판원장, 관계기관,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는 고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법원판결에 따른 상호합의 무효 조항 삭제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(좌 동)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, 경정결정 등 세법상 필요한 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좌 동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상호합의 종결 후 상반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는 무효 	<p><삭 제></p>
<p><신 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의견청취절차 신설 ●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 종결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

<개정이유> 불필요한 쟁송 방지 및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(7)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 (국조법§31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</p> <p>●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정보*를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가능 * 조세의 부과·징수·쟁송 등에 필요한 정보</p>	<p>□ 실제 소유자 정보 획득, 교환</p>
<p><추 가></p>	<p>- 상대국 요청시 조세정보에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* 포함 * Beneficial Owner: 법인·법적 계약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배·통제하는 개인(자연인)</p>
<p><신 설></p>	<p>● 과세당국은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소유자 정보 요구가능</p> <p>- 실제 소유자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</p> <p>※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의 실제 소유자 범위 준용</p>

<개정이유> OECD의 국가별 정보교환 제도에 대한 핵심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조세정보의 수집·교환 범위 확대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

(8)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(국조법§31의 4①)

현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●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에 금융회사가 불응시 :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●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에 불응시 : 2천만원 이하 과태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조세정보 중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● (좌 동) ● 조세정보 중 실제소유자 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 : 2천만원 → 3천만원 ※ 기타 조세정보에는 2천만원 과태료 유지

<개정이유> 금융정보·조세정보(실제소유자 정보) 요청 불응시 동일한 과태료 적용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정보요청에 불응하는 분부터 적용

(9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합리화

①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 과태료 미부과 규정 신설 (국조법§35④)

현행	개정안								
<p>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* 불이행시 제재 *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</p> <p>● 미신고 과태료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3 462 1309 805"> <thead> <tr> <th>신고의무 위반금액</th> <th>과태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억 이하</td> <td>해당금액의 10%</td> </tr> <tr> <td>20억~50억</td> <td>2억원+20억원 초과금액의 15%</td> </tr> <tr> <td>50억 초과</td> <td>6.5억원+50억원 초과금액의 2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신고의무 위반금액	과태료	20억 이하	해당금액의 10%	20억~50억	2억원+20억원 초과금액의 15%	50억 초과	6.5억원+50억원 초과금액의 20%	<p>● (좌동)</p>
신고의무 위반금액	과태료								
20억 이하	해당금액의 10%								
20억~50억	2억원+20억원 초과금액의 15%								
50억 초과	6.5억원+50억원 초과금액의 20%								
<p>● 형사처벌(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): 미신고금액 13~20%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</p>	<p>● (좌동)</p>								
<p>● 형사처벌시 과태료 미부과 <신설></p>	<p>● (좌동) - 통고처분*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에도 과태료 미부과 * 형사고발 전 벌금상당액을 통고하고 납부시 미고발</p>								

<개정이유>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도 벌금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고려하여 벌금-과태료 이중처벌 가능성 해소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통고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

2. 소득·법인세법

(1)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

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(소득법§119, 법인법§93)

현행	개정안
<p>□ 국내원천 사용료소득</p> <p>● (과세대상) 다음의 권리·자산·정보의 국내 사용·지급·양도 대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술·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, 특허권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- 산업상·상업상·과학상의 지식·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	<p>□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</p> <p>(좌 동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용지(使用地) 기준 조세조약*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'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·권리' * 한-미 조세조약 ·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·기술 · 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·생산 등에 사용될 것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원천 판단의 특례) 국외에서 등록된 권리 (특허권 등)가 국내에서 제조·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
<개정이유>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②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

(소득법 §119. §156①, 법인법 §93. §98①)

현 행	개 정 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원천 기타소득*</p> <p>* 다른 국내원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</p> <p>① 국내 부동산, 기타 자산,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, 보상금, 손해배상금</p> <p>②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, 배상금</p> <p>③ 기타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대가를 기타소득에 별도로 신설</p> <p>(좌 동)</p> <p>④ 사용지(使用地) 기준 조세조약 상 체약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 등록(국내 미등록)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모든 소득*</p> <p>* 손해배상금, 보상금, 화해금, 일실이익 등</p> <p>- 해당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방법·기술·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·생산 등에 사용될 것</p>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세율</p> <p>● 국내원천 기타소득: 20%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세율 특례 신설</p> <p>● (좌 동)</p>
	<p>- (예외) 상기(④) 기타소득: 15%*</p> <p>* 한-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제한세율</p>

<개정이유> 국외 등록 특허의 침해 보상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(2)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(소득법 §119.9, 법인법§93.7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 소득의 국내 과세대상자산</p> <p>① 토지, 건물, 부동산에 관한 권리, 영업권, 시설물 이용권</p> <p>② 부동산 주식*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p>*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: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% 이상인 비상장주식</p>	<p>□ 국내 부동산 주식의 과세대상 명확화</p> <p>(좌 동)</p> <p>-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*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주식</p> <p>* 한-미 양국은 '99년 상호합의를 통해 조약 상 '부동산 주식'의 양도소득 원천지를 부동산 소재지국으로 합의</p>

※ 세수효과 : 없음 ※ 자체발굴

<개정이유> '부동산 주식'의 과세권에 대한 한-미 조세조약의 해석·적용 명확화

3. 조세특례제한법

(1)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(조특법 §18)

현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● (대상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,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(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) ● (좌 동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감면율) 모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동일한 감면율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년간 소득세 50%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left: 100px;"><추 가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감면율)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에 적용되는 감면율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일반) 5년간 소득세 50% - (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*) 3년간 70%, 이후 2년간 50% *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적용기한) '21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는 '22.12.31.

<개정이유>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·부품·장비 개발지원
 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

(2)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지특법 이관 등 (조특법 §121의 2)

현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※ '18년 개정시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●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*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개별형 외투지역 ·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· 개별소비세 포함 ● 외투기업이 구입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면제(최장15년) ● 감면결정시 관계 중앙관서*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산업통상자원부, 경제자유구역청, 지방자치단체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 및 행안부 협의절차 추가 ● (좌 동) ● 조특법상 취득세·재산세 면제는 '19년말 신청분까지 적용 ※ 향후 면제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·유지 ● 협의대상 추가 : 행정안전부 장관

<개정이유> 지방세 감면 관련규정을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4. 국제기본법

(1)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

(국기법 §45의2, 소득법 §156의2·4·6, 법인법 §98의 4·5·6)

현행		개정안	
□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·외국 법인의 경정청구		□ 경정청구 절차 일원화 및 소득·법인세법 상 경정청구 범위 확대	
구분(청구권자)	경정청구 대상	구분	경정청구 대상
국세기본법 (국외 원천징수대상자)	일반 세액의 과오납 후발적 사유 발생*	<삭제> (좌동)*	(좌동)
소득·법인세법 (소득의 실질귀속자)	조세조약 적용 과오납 ● 비과세·면제 미적용 ● 제한세율 미적용 <추가>		(좌동) ● 제한세율 미적용 및 다른 제한세율 적용 ● 후발적 사유 발생
* 후발적 사유(판결, 귀속자 변경, 상호합의 등) 발생 시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(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)		* 후발적 사유(판결, 귀속자 변경, 상호합의 등) 발생 시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(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)	

<개정이유>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 일원화 및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(2) 역외거래의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율 인상 (국기법 §47의 2,3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일반거래) 40% ● (국제거래*) 6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국내외거래 	<p>□ 가산세율 적용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좌 동) ● (역외거래*) 6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국내외거래 + 거주자간의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

<개정이유> 성실신고유도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

(3)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사유를 국제거래에서 역외거래로 확대 (국기법 §81의 8)

현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사유 ● 무자료거래 등 ● 국제거래*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 *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국내외거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연장사유 확대 ● (좌 동) ● 역외거래*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 *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국내외거래 + 거주자간의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

<개정이유>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적발이 어려운 역외탈세에 대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세무조사하는 분부터 적용